

大田廣域市工業團地特別會計設置條例案에對한修正(案)

議 案	
番 號	479

提出日字 : 1994. 12.

提出者 : 大田廣域市長

1. 修正理由

- 가. 3·4 工業團地 造成事業을 公企業特別會計로 推進하던 公營開發事業團이 '94. 12. 31 廢止됨에 따라 現在 造咸中인 4工團 造成과 科學產業團地의 持續的인 事業推進은 물론 造成이 完了된 工業團地의 效率적인 관리를 위하여 工業團地特別會計를 設置 運營코자 하였으나,
- 나. 公營開發事業團 廢止가 '95. 6月未로 延期됨에 따라 工業團地特別會計 設置條例 施行을 '95年7月1日로 變更코자 하는 것임.

2. 主要骨子

- 工業團地 特別會計 設置條例는 1995年 7月1日부터 施行하기로 함.
(부칙)

대전광역시공업단지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전광역시공업단지특별회계설치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중 “1995년 1월1일”을 “1995년 7월1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당 초 안	수 정 안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u>1995년 1월 1일</u> 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u>1995년 7월 1일</u> 부터 시행한다.

大田廣域市工業園地特別會計設置條例制定

□ 根 據

○ 地方財政法 第5條 (會計의 區分)

- 地方自治團體의 會計는 一船會計와 特別會計로 區分
- 特別會計는 公營企業 기타 特定事業을 運營할 때 또는 特定資金이나 特定歲入·歲出로서 一船歲入·讀出과 區分하여 經理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法律 또는 條例로 設置가 可能

○ 大田廣域市地方工業園地造成 및 分讓에 關한 條例 第27條(特別會計의 設置)

市長은 工業園地造成事業의 合理的인 推進을 위하여 事業의 收入과 支出은 一般會計와 區分하여 계리하도록 工業園地 特別會計 設置가 可能

□ 現 況

- 3工團 및 4工團은 公營開發事業團에서 公營開發事業特別會計로 事業施行에 필요한 財政을 運營하여 왔으며,
- 來年부터 본격적으로 事業이 차수될 科學產業園地의 경우도 3·4工團과 같이 公營開發事業團에서 推進할 計劃이었음.

□ 問題點

大田直轄市公營開發事業團設置條例(조례 제1894호, 1989. 3. 24)가 1995. 6월 말로 폐지됨에 따라 그 후 工業團地造成事業의 施行을 綜合 健設本部에서 推進토록 하였으나, 財政運營 필요한 特別會計는 미설치

□ 改善方案

3·4 工團 및 科學產業團地의 特續的 圓滑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財政運營에 필요한 特別會計 設置條例를 制定

□ 措置事項

「公營開發事業設置條例」 改正

〈別添〉

1. 大田廣城市工業團地特別會計設置條例案 提案書
2. 大田廣城市工業團地特別會計設置條例案
3. 工業團(用)地 關聯 特別會計設置條例 比較

大田廣域市工業園地特別會計設置條例案

議 案	
番 號	

提出日字 : 1994. 12.

提出者 : 大田廣域市長

1. 提案理由

3·4 工業園地 造成事業은 財政運營上 公營開發事業團에서 公企業 特別會計로 推進하여 왔으나, 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가 내년 6월 말로 廢止됨에 따라 동 特別會計도 폐지될 計劃으로 있어, 현재 造成中인 4工團 計劃中인 科學產業園地 持續的인 사업추진은 물론 造成이 완료된 공업단지의 效律的인 管理를 위하여 大田廣域市工業園地 特別會計를 設置·運營코자 함.

2. 主要骨子

가. 歲入은 用地分讓代金, 一般會計 轉入金, 借入金, 補助金 및 기타 收入金으로 하고, 工團造成에 필요한 모든 經費를 歲出로 하되 園地別 獨立採算을 原則으로 함(안 제2조)

나. 事務處理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一般會計의 例에 依함(안 제3조)

3. 參考事項

가. 工業團地 現況

구 분	위 치	면 적 (천평)	사업기간	총사업비 (억원)	비 고
1·2공단	대덕구 읍내· 대화동 일원	380	'69~'79	38	조성완료
3 공 단	대덕구 문평· 신대동 일원	373	'90.3~ '92.12	1,099	조성완료
4 공 단	대덕구 신일· 목상·문평동 일원	575	'91~'97	3,047	조 성 중
과학산업단지	유성구 관평· 용산·답립· 송강동 일원	1,290	'90~'97	5,246	실시계획 수립중

나. '94년도 工業團地造成關聯 豫算想編成 狀況

(단위 : 천원)

수 입 (A)	지 출 (B)
계 26,855,577	계 12,875,912
○ 3공단 공장용지 분양금 5,051,340	○ 3공단 폐수처리장 시설비 6,600,000
○ 3공단 폐수처리장시설부담금 6,600,000	○ 4공단 조성사업 6,275,912
○ 4공단 선수금 15,204,237	
차 액 (A-B) 13,979,665	

※、「'94年度 公營開發事業公企業特別會計豫算書」參照

다. 關聯法規

○ 地方財政法

第5條(會計의 區分) ① 地方自治團體의 會計는 一般會計와 特別會計로 區分한다.

② 特別會計는 公營企業 기타 特定事業을 운영할 때 또는 特定資金이나 特定歲入·歲出로서 一般歲入·歲出과 區分하여 經理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法建 또는 條例로 설치할 수 있다.

○ 大田直轄市地方工業團地造成 및 分讓에 관한 條例

第27條(特別會計의 設置) 市長은 工業團地造成事業의 合理的인 推進을 위하여 事業의 收入 과 支出은 一般會計와 區分 계리하도록 工業團地 特別會計로 設置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공업단지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가 시행하였거나 시행하는 공업단지의 효율적 관리 및 조성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공업단지 특별회계 (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세출)이 회계는 용지분양대금, 일반회계 전입금, 차입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고, 공단조성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세출로 하되 단지별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사무처리) 이 회계의 사무처리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大田廣域市工業團地特別會計設置條例案

審　　查　　報　　告

1995. 3. .

產業建設委員會

1. 審查經過

- 가. 提出日字 및 提出者 : 1994. 10. 21. 大田廣域市長
- 나. 回附日字 : 1994. 10. 26.
- 다. 上程日字 : 第39回 大田廣域市 議會 臨時會
第1次 產業建設委員會(1995. 3. 27) 上程,
質疑, 審查, 修正 議決

2. 提案說明의 要旨

(提案說明者 :

- 가. 提案理由

3.4 工業團地 造成事業은 財政運營上 公營開發事業團에서 公企業 特別會計로 推進하여 왔으나 公營開發事業團 設置條例가 '95年 6 月末로 廢止됨에 따라 同特別會計도 廢止될 計劃으로 있어, 現在 造成中인 4工團과 計劃中인 科學產業團地의 特續的인 事業 推進 은 물론 造成이 完了된 工業團地의 效率的인 管理를 위하여 大田廣域市 工業團地 特別會計를 設置 · 運營코자 함.

- 나. 主要骨子

- (가) 歲入은 用地分讓代金, 一般會計 轉入金, 借入金, 補助金 및 기타 收入金으로 하고, 工團造成에 필요한 모든 經費를 歲出로 하되 團地別 獨立採算을 原則으로 함. (案 第2條)
- (나) 事務處理는 이 條例에 規定한 것을 除外하고는 一般會計의 例에 의함. (案 第3條)
- (다) 工業團地 特別會計 設置條例는 1995年 7月 1日 부터 施行하기로 함. (附則)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 异 기 현)

가. 提案理由 및 主要骨子 : 앞의 内容과 같음.

나. 檢討意見

- 本 條例案은 그 동안 公營開發事業을 推進해 오던 大田廣域市 公營開發事業團이 '95年6月末로 解體됨에 따라 公營開發事業團 設置條例 廢止와 함께 同 特別會計도 廢止될 計劃에 있어 工業 團地 特別會計 設置條例案을 制定하려고 하는 것으로 當初에는 '95年 1月 1日부터 工業團地 特別會計 設置 條例를 制定施行하려 하였으나 한밭開發公社에서의 公營開發事業團 業務 引受 時期의 促迫등으로 인하여 公營開發事業團 解體가 '95年 6月末로 延期됨에 따라 '95年 7月 1日부터 施行키로 하는 修正案이 提出된 事案임.
- 條例案의 主要內容을 報告드리면,
그 동안 大田廣域市에서 施行하였거나 施行하는 工業團地의 效率 的 管理 및 造成事業의 持續的 推進을 위하여 工業團地 特別 會計를 設置하는 것이며, 特別會計의 歲入은 用地分讓代金, 一般會計 轉入金, 借入金, 補助金 및 其他 收入金으로 하고 工團 造成에 必要한 모든 經費를 歲出로 하며, 團地別 獨立採算을 原則으로 하는 것을 主要內容으로 하고 있음.
- 條例案을 全般的으로 檢討해 볼 때
關聯 法인 地方財政法에 依據 特別會計는 公營企業, 其他 特定 事業을 運營할때 또는 特定資金이나 特定歲入 · 歲出로서, 一般

歲入 · 歲出과 區分하여 經理할 必要가 있을 때 한하여 法律 또 는 條例로 設置할 수 있다는 規定에 符合이 되며, 또한 大田廣

域市 地方工業團地 造成 및 分讓에 관한 條例에서 規定한 工業團地 特別會計의 設置 根據에 依據 本 條例의 制定은 妥當하다고 判斷이 됨.

- 아울러 現在 造成中인 4工團과 造成計劃中에 있는 科學產業團地의 持續的인 事業推進 및 造成이 完了된 工業團地의 效率的인 管理를 위해서는 特別會計의 設置運營이 必要하다고 思料가 됨.

4. 質疑 및 答辯要旨

생략

5. 討論要旨

없음

6. 小委員會 審查內容

없음

7. 少數意見의 要旨

없음

8. 審查結果

原案可決

9. 其他 必要한 事項

없음